제3차산업경제위원회 2016.7.12(화) 17:00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## 3. 제안 이유

- 수목원 휴원일의 특별개원 조항 신설로 이용객 편익을 증대하고,
-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분야로 확정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<del>수목원 이용객 편익증대를 위한 특별개원 조항 단서 신설(안 제4조)</del>
  - 휴원일 중 개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원
- 수목원 내 입장제한 및 행위의 제한 규정 폐지(안 제7조, 제8조)
  - '12년부터 산악자전거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단서 내용 삭제

#### 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수목 원이 쉬는 날에도 특별개원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 하고,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분야로 확정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○ 다만, 개정안 제4조제1항 단서에 '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'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.